

공유재산(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 특수조건

○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스포츠센터 A동 지하1층

구 분	면 적(㎡)			비 고
	계	전용	공용	
식당	634.53	483.55	150.98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 식당 운영자가 사용·수익허가 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한다.

제2조(판매 품목의 종류, 품질 및 판매가격 결정) ① 사용자는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조한 제품
2.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기재 등) 제품
3.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4.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5.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의 식품
6.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판매 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판매 시 이용자들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표시

② 사용자는 식당 메뉴의 종별과 가격을 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 전 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라고 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운영) ①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와 가격, 원산지 표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식당으로 가는 입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음방지 등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식당 위생관리) ① 공사는 식당의 식품 조리 및 위생관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각종 조리도구 등에 대해 열소독·일광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식당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위생 사고를 대비한 영업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식당의 전체적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식당 종사원은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사원은 항상 청결한 근무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기구·용기 등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또는 원재료 등과 접촉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냉장 및 냉동시설을 설치한다.

④ 사용자는 항상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모든 보상의무를 진다.

⑤ 사용자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기타사항) 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기간 동안 식품 가격을 임의로 인상 할 수 없으며, 물가인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